

1. 개정이유

운항관리자 직무범위 확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 확대 및 내항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교통불편 최소화 대책을 추가하여
현행 시행규칙을 보완하고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는 해운법
개정(‘25.4.22.)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항관리자의 직무범위 확대(안 제15조의12제1항제14호, 15호 및 16호 신설)
운항관리자의 직무범위에 안전 위해요소 발굴, 이용객의 안전 교육,
선원의 안전·보건 관리 지원 등 추가

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관련 조문 삭제(안 제15조의16 삭제)
해운법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및
제22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이 폐지(‘25.4.22.)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다.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안 제26조의6제1항제3호 신설)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

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기준 신설(안 별표 4의2제3호 신설)
별표 4의2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에 제3호를 신설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

- 마.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에 교통불편 해소 대책 추가(안 별지 제8호)
해운법 제12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휴항 등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불편 해소 대책 추가
- 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의 사업분야 확대(안 별지 제21호의6서식)
별지 제21호의6서식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의 인증신청 사업
분야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그 이용 화주를 추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2제1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여객선 항로 및 집안시설의 안전 위해요소 발굴 및 관계기관 협력 요청 등 개선 노력
15. 이용객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16. 내항여객선 선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지원

제15조의16을 삭제한다.

제26조의6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그 화주가.
 - 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 나. 화물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별표 4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교통불편 해소 대책(해운법 제12조제4항의 변경인가 사항인 경우)

별지 제21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제26조의7 관련)

1.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및 그 화주

인증분야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공통 기준		리더십	최고 의사결정자의 선화주 상생 의지
			선화주 상생 계획
		사업 안정성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재무 안정성
		공익성	「해운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제도의 준수 정도
			경제 기여도
			해운산업 기여도
개별 기준	화주	동반성장 노력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의 지속성
			그 밖의 동반성장 노력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 노력	표준계약서 이용 실적
			장기계약 체결 비중
			최소약정물량 준수
	선사	상생 서비스 수준	서비스품질
			선사의 차별화 서비스
		해운 서비스 전략	항로 배선 계획
			화주 대응 수준
			해운산업 친환경 정책 참여도

2.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 및 그 화주

인증분야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공통 기준		리더십	최고 의사결정자의 선화주 상생 의지
			선화주 상생 계획
		사업 안정성	장기계약의 안정성
			재무 안정성
		공익성	「해운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제도의 준수 정도
			경제 기여도
			해운산업 기여도
개별 기준	화주	동반성장 노력	장기계약 기간
			선박 제공 여부
			그 밖의 동반성장 노력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 노력	장기계약 운임 조건
			장기계약 적합성
			부대 조건 등 계약 공정성
	선사	상생 서비스 수준	서비스품질
			선사의 차별화 서비스
		해운 서비스 전략	선적지/양하지 서비스 수준
			화주 대응 수준
			해운산업 친환경 정책 참여도

3.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및 그 화주

인증분야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공통 기준	리더십		최고 의사결정자의 선화주 상생 의지
			선화주 상생 계획
	사업 안정성		장기계약의 안정성
			재무 안정성
	공익성		「해운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제도의 준수 정도
			경제 기여도
			해운산업 기여도
개별 기준	화주	동반성장 노력	장기계약 기간
			선박 제공 여부
			그 밖의 동반성장 노력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 노력	장기계약 운임 조건
			장기계약 적합성
			부대 조건 등 계약 공정성
	선사	상생 서비스 수준	서비스품질
			선사의 차별화 서비스
		해운 서비스 전략	선적지/양하지 서비스 수준
			화주 대응 수준
			해운산업 친환경 정책 참여도

☐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신고: 2일
☐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			인가: 7일
신 고 인	① 상호(명칭)		② 설립연월일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		
	⑥ 사업의 종류		
⑦ 변경하려는 사항 및 기간		변경 전	변경 후
⑧ 변경사유			
⑨ 교통불편 해소 대책 (해운법 제12조제4항의 변경인가 사항인 경우)			
「해운법」 제12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신고(변경인가신청)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8 –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업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인증신청 사업분야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 화주		

「해운법」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및 그 화주
	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나. 최근 3년간의 항로별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 및 그 화주
	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나. 화물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및 그 화주
	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나. 화물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심 사	➔	인 증	➔	통 지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인증전담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4. 여객선 항로 및 접안시설의 안전 위해요소 발굴 및 관계 기관 협력 요청 등 개선 노력</u>
<u><신 설></u>	<u>15. 이용객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u>
<u><신 설></u>	<u>16. 내항여객선 선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지원</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자를 둬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운임의 1천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u><삭 제></u>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부담금의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5항에서 “채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납자가 사망한 경우

2. 채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채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채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채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양수

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
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
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
출해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② ~ ⑤ (생 략)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①

-----.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라 한다) 및 그 화주

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나. 화물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 ⑤ (현행과 같음)